



: 2017-09-25

판결경정 결정 있음

광 주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16구단10803 재산세등부과처분취소
원 고 [redacted]공단
피 고 1. [redacted]광역시 [redacted]구청장
2. [redacted]시장
3. [redacted]시장
4. [redacted]시장
변 론 종 결 2016. 8. 17.
판 결 선 고 2016. 10. 13.

주 문

1. 피고들이 원고에 대하여 별지2 목록 기재 각 과세처분일에 별지2 목록 기재 과세대상 부동산에 관하여 한 재산세(재산세 도시지역분 포함), 지방교육세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원고와 피고 [redacted]광역시 [redacted]구청장 사이에 생긴 부분 중 6/10은 원고가, 4/10는 피고 [redacted]광역시 [redacted]구청장이, 원고와 피고 [redacted]시장 사이에 생긴 부분 중 7/10은 원고가, 3/10은 피고 [redacted]시장이, 원고와 피고 [redacted]시장 사이에 생긴 부분 중 7/10은 원고가, 3/10은 피고 [redacted]시장이, 원고와 피고 [redacted]시장 사이에 생긴



: 2017-09-25

부분 중 7/10은 원고가, 3/10은 피고 ■■■시장이 각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들이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1 목록 기재 각 과세처분일에 별지 제1 목록 기재 과세대상 부동산에 관하여 한 재산세(도시지역분 포함), 지역자원시설세, 지방교육세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이 유

1. 피고들의 처분 경위

가. 피고 ■■■광역시 ■■■구청장의 처분 경위

1) 원고는 ■■■고속철도사업의 일환으로 호남고속철도 광주차량정비기지 내에 있는 ■■■구 ■■■동 ■■■에 지하수 관정시설(1.9685인치, 굴착 깊이 120m, 별지1 목록 순번 제1항 부동산, 이하 '이 사건 관정시설'이라 한다)을 설치하였고, ■■■고속철도사업의 일환으로 ■■■구 ■■■동 ■■■ 일대 토지에 연면적 24,847㎡의 ■■■역사(그 중 임대면적은 스텍코너 72㎡, 커피숍 21.6㎡, 제과점 52㎡, 편의점 52㎡ 등 합계 197.6㎡이다. 이하 '이 사건 ■■■역사'라고 하고, 임대 부분은 '이 사건 임대부분'이라 한다)를 건축하여 2015. 2. 16.경 관할관청으로부터 준공 전 사용허가를 받았다.

2) 이 사건 관정시설이 설치된 ■■■구 ■■■동 ■■■토지는 2010. 5. 6.자 공공용지의 협의취득을 원인으로 2010. 5. 7. 원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된 후 2016. 6. 10.자 국가귀속을 원인으로 2016. 8. 1. 대한민국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3) 피고 ■■■광역시 ■■■구청장(이하 '피고 ■■■구청장'이라고 한다)은 과세기준일 2015. 6. 1. 원고가 위 각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음을 전제로 2015. 7. 28. 원고에게 별지1 목록 기재 순번 제1, 2항과 같이 재산세(도시지역분 포함), 지역자원시설세, 지방교육세 등의 과세처분을 하였다.

나. 피고 ■■■시장의 처분경위

1) 원고는 ■■■복선전철화 사업과 ■■■-■■■복선화 사업의 일환으로 별지1 목록 순번 제3항 내지 10항 기재 역사건물과 철도시설 등을 건설하여 관할관청으로부터 2009. 12. 9., 2011. 2. 9., 2011. 9. 22.경에 각 준공 전 사용허가를 받았다.

2) 그 후 별지1 목록 기재 순번 제3항 내지 10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6. 3. 11. 원고 명의로 소유권보전등기가 마쳐졌고, 그 중 제3항 내지 9항 부동산에 관하여는 2016. 6. 10.자 국가귀속을 원인으로 2016. 9. 8. 대한민국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3) 피고 ■■■시장은 과세기준일 2015. 6. 1. 원고가 위 각 부동산 등을 소유하고 있음을 전제로 2015. 7. 7. 원고에게 별지1 목록 순번 제3항 내지 10항 기재와 같이 재산세 도시지역분, 지역자원시설세의 과세처분을 하였다(재산세 재산분은 면제함)

다. 피고 ■■■시장의 처분 경위

1) 원고는 ■■■-■■■복선전철화 사업의 일환으로 별지1 목록 순번 제11항 내지 14항 기재 역사건물 등을 건축하여 관할관청으로부터 2009. 12. 11., 2010. 8. 31., 2011. 4. 5. 각 준공 전 사용허가를 받았고, 국토교통부장관은 2015. 9. 16. 위 사업에 관하여 준공고시를 하였으며, 그 후인 2016. 2. 17.과 2016. 3. 3.에 대한민국 앞으로



소유권보존등기가 각 마쳐졌다.

2) 피고 ■■■시장은 과세기준일 2015. 6. 1. 원고가 위 각 건축물을 소유하고 있음을 전제로 하여 2015. 7. 10. 원고에게 별지1 목록 순번 제11항 내지 14항 기재와 같이 재산세 도시지역분, 지역자원시설세의 과세처분을 하였다(재산세 재산분은 면제함).

라. 피고 ■■■시장의 처분 경위

1) 원고는 ■■■복선전철화 사업의 일환으로 ■■■시 ■■■동 ■■가 ■■■ 지상 건축물(연면적 847.96㎡, 별지 1목록 순번 제15항)에 관하여 2014. 12. 18.자 공공용지협 의취득을 원인으로 하여 2014. 12. 19.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2) 피고 ■■■시장은 과세기준일 2015. 6. 1. 원고가 위 부동산을 원고가 소유하고 있음을 전제로 2015. 7. 7. 원고에게 별지1 목록 순번 제15항 기재와 같이 재산세 도시지역분, 지역자원시설세의 과세처분(이하, 위 피고들의 각 과세처분을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재산세 재산분은 면제함).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가지번호 포함), 갑 제2호증(가지번호 포함), 을가 제1, 2호증, 을나 제1호증, 을다 제1호증, 을다 제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1) 과세기준일에 소유권이 국가에 귀속되었다는 주장

이 사건 각 처분의 대상이 된 별지1 목록 기재 과세대상 부동산은 원고가 철도 건설사업과 관련하여 취득한 것으로서 이 사건 각 처분의 과세기준일인 2015. 6. 1. 이



전에 이미 관련된 각 단위사업이 끝나 준공 전 사용허가를 받아 공용이 개시되어 그 소유권이 국가에 귀속되었는바, 따라서 2015. 6. 1. 현재 건축물대장이나 부동산등기부에 원고가 소유자로 등재되어 있다는 이유만으로 원고에게 재산세, 재산세 도시지역분, 지역자원시설세, 지방교육세를 부과한 이 사건 각 처분은 위법하다.

2)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63조 제1항 단서 제2호에 따른 면제 주장

구 지방세특례제한법(2015. 12. 29. 법률 제136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지특법'이라 한다) 제63조 제1항 단서 제2호는 철도건설법 제17조 제1항에 따라 국가에 귀속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위 면제되는 재산세에는 같은 항 본문에서 규정하고 있는 재산세 도시지역분이 포함됨에도, 재산세 도시지역분을 부과한 이 사건 각 처분은 위법하다.

나. 피고들의 주장

1) 피고들의 공통된 주장

가) 원고가 시행한 각 철도사업은 단위사업이 종결되지 아니하여 과세기준일인 2015. 6. 1. 기준으로 국가에 그 소유권이 귀속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그 소유자인 원고에게 부과한 이 사건 각 처분은 적법하다.

나) 구 지특법 제63조 제1항 단서 제2호는 국가에 귀속되는 부동산에 대하여 재산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본문과 달리 면제되는 재산세에 재산세 도시지역분을 포함한다고 명시하고 있지 아니한바, 따라서 조세법규의 엄격해석 원칙상 위 면제대상인 재산세에는 재산세 도시지역분이 포함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각 처분은 적법하다.

2) 피고 ■■■구청장의 추가 주장



가) 과세대상인 ■■■■■ 구 ■■■■ 동 ■■■■ 소재 이 사건 관정시설은 원고가 철도 차량 청소 등 다목적으로 이용하기 위해 지하수법에 따라 이용허가를 받고 준공 신고한 시설로서 원고나 소외 한국철도공사가 지속적으로 사용하는 시설물이므로, 향후 국가에 귀속된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구 지특법 제63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재산세(재산분), 재산세(도시지역분)의 50% 경감대상에 해당할 뿐, 면제대상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나) 과세대상인 이 사건 ■■■■ 송정역사 건물 중 휴게음식점 등 임차인들에게 임대한 부분은 원고가 철도시설에 직접 사용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구 지특법 제63조 제1항의 경감 또는 면제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3. 관련 법령

별지 3. 기재와 같다.

4.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성

가. 과세기준일 2015. 6. 1. 기준 과세대상 부동산의 국가 귀속 여부

1) 관련 법령의 검토

가) 지방세법 제107조, 제112조, 제114조, 제143조, 제150조에 의하면, 재산세, 재산세 도시지역분, 지역자원시설세, 지방교육세는 과세기준일 기준 해당 과세대상 부동산의 소유자가 납세의무자이다.

나) 한편, 철도건설법 제17조 제1항 본문은 "철도건설사업으로 조성 또는 설치된 토지 및 시설은 준공과 동시에 국가에 귀속된다"고 규정하고, 제17조 제3항에서 "고속철도건설사업으로 조성 또는 설치된 토지 및 시설의 귀속에 관하여는 사업시행자가 한국철도시설공단인 경우에는 「한국철도시설공단법」에 따른다"고 규정하며, 한국



철도시설공단법 제24조 제1항 본문은 "국가는 제7조에 따라 공단이 건설한 철도시설과 철도의 역세권 및 철도 부근 지역의 개발 사업 등과 관련하여 취득한 재산·시설 및 그 운영에 관한 권리(이하 "자산"이라 한다)와 그 자산과 관련된 채무 등의 의무(이하 "부채"라 한다)를 각 사업이 끝나는 때에 포괄하여 승계하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제1항은 "법 제24조 제1항 본문에서 "각 사업"이란 「철도건설법」, 「택지개발촉진법」 또는 그 밖에 공단의 사업과 관련된 법령에 따라 실시계획의 승인 등을 받은 단위사업을 말한다"고 규정하며, 제3항은 "법 제24조 제1항에 따른 자산 및 부채의 승계시기는 제1항에 따른 단위사업이 끝나 공용이 개시되는 날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관한 절차적 사항으로 한국철도시설공단법 제24조 제2항은 한국철도시설공단은 자산과 부채를 인계하기 위해 인계에 관한 서류를 작성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을 승인을 받아야 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제2항은 인계승인신청서에 인계 자산의 범위 목록, 인계자산 및 부채의 가액 등의 사항을 기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 위 법령의 규정에 의하면, 철도건설사업으로 조성 또는 설치된 토지 및 시설은 "철도건설사업이 준공된 때"에, 고속철도건설사업으로 조성 또는 설치된 토지 및 시설은 "단위사업이 끝나 공용이 개시된 날"에 각 국가에 귀속되므로, 위 각 귀속시기에 철도건설사업과 관련된 자산 전체와 부채가 포괄적으로 국가에 승계된다고 할 것이다.

2) 판단

가)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을가 제1, 2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국토해양부장관은 2009. 4. 16. ■■■ 고속철도건설사업 실시계획을 승인하고 이를 고시한 사실, 위 건설사업은 ■■■~■■■ 승정을 사업구간으로 하여 토공 70,255m,



교량 68,393m(98개소), 터널 45,854m(32개소), 궤도(본선 및 정거장 1식), 정거장(■■■■역, ■■■■역, ■■■■역, ■■■■) 등의 시설 등을 조성하거나 설치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는 사실, 위 승인된 실시계획에 따라 원고는 ■■■■고속철도건설사업의 시행자로서 위 건설사업 중 일부인 ■■■■역사를 건축하여 2015. 2. 16. 관할관청으로부터 준공 전 사용허가를 받은 사실, 위 준공 전 사용허가 물량내역에는 승인된 사업실시계획 중 ■■■■역 선상역사, 여객통로, 승강장 흙지붕이 포함되어 있으나, 자유연결통로, 간이 검수, 광장 및 주차장 일부에 대하여는 공사가 완료되지 아니하여 잔여 사업으로 남아 있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앞서 살펴 본 관련 법령과 위 사실관계에 의하면, ■■■■고속철도건설사업으로 조성된 토지 및 시설 등의 국가로의 귀속 시기는 실시계획승인을 받은 단위사업인 ■■■■고속철도건설사업이 끝나 공용이 개시된 날에 국가에 귀속된다고 할 것인데, 앞서 본 바와 같이 과세기준일 2015. 6. 1.까지 사업시행자인 원고는 그 중 일부인 ■■■■역사 일부에 대하여 준공 전 사용허가만을 받았을 뿐 전체 ■■■■고속철도건설사업을 완료한 상태는 아니었으므로, 2015. 6. 1. 과세기준일에 단위사업인 ■■■■고속철도건설사업이 끝났다고 볼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위 과세기준일에 이 사건 ■■■■역사와 이 사건 관정시설이 국가에 귀속되었다고 볼 수 없다.

나) 또한, 앞서 본 바와 같이 '■■■■복선전철화사업', '■■■■복선화사업' '■■■■복선전철화 사업' 등의 일환으로 건설된 별지1 목록 기재 순번 제3항 내지 15번 항의 각 과세대상 부동산에 대하여 원고는 2009. 12. 9.부터 2011. 9. 22.경 사이에 준공 전 사용허가를 받았을 뿐 이를 준공승인으로 볼 수 없고, 그 이후 과세기준일인 2015. 6. 1.까지 위 각 철도건설 사업과 관련해 준공승인을 받았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도 없으므로, 위 과세기준일에 각 과세대상 부동산의 소유권이 국가에 귀속되었다고 볼 수 없다.

다) 따라서 과세기준일인 2015. 6. 1. 별지1 목록 기재 각 과세대상 부동산의 소유권이 철도건설법 또는 한국철도시설공단법에 따라 국가에 귀속되었음을 전제로 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 구 지특법 제63조 제1항에 따른 재산세(재산분), 재산세 도시지역분의 면제 여부에 관한 판단

1) 피고 ■■■구청장의 이 사건 관정시설과 이 사건 ■■■역사 중 임대부분에 대한 재산세(재산분), 지방교육세 과세처분에 관한 판단

가) 처분의 내용

갑 제1호증의 1, 2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 ■■■구청장은 별지1 목록 순번 제 1, 2항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 과세를 하면서 재산세 재산분과 재산세 도시지역분을 구분하지 않고 합산하여 과세를 하였으나, 그 과세액에는 이 사건 관정시설의 재산세(재산분) 6,210원(50% 과세), 이 사건 임대부분의 재산세(재산분) 264,191원(100% 과세)이 포함되어 있다고 밝히고 있으므로, 먼저 위 재산세(재산분) 처분의 적법성에 관하여 판단한다.

나) 관련 법령의 내용

구 지특법 제63조 제1항 및 단서 제2호는 원고가 과세기준일 현재 철도시설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의 50%를 경감하고, 다만 철도건설법 제17조 제1항에 따라 국가로 귀속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철도건설법은 "철도시설"에 관하여 제2조 제6호 가목에서 '철도의 선로, 역 시설 및 철도 운영을 위한 건축물·건축설비'를 철도시설의 하나로 규정하면서, 위 역 시설에는 '역사와 같은 건물에 있는 판매시설·업무시설·근린생활시설·숙박시설·문화 및 집회시설 등을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호 나목은 '선로 및 철도차량을 보수·정비하기 위한 선로 보수기지, 차량 정비기지 및 차량유치시설'을 철도시설로 보고 있다. 또한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제3조 제2호 가목도 '철도시설'인 역 시설에는 편의시설 등을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판단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관정시설과 이 사건 [REDACTED]역사(임대부분 포함)는 [REDACTED]고속철도사업의 일환으로 건축된 철도시설이나 부동산으로서 향후 단위사업인 [REDACTED]고속철도건설사업이 종료되어 공용이 개시된 날에 포괄적으로 국가에 귀속되는 자산이다. 그리고 이 사건 [REDACTED]역사 중 임대부분도 철도건설법 등이 정한 철도시설 중 편의시설로서 현재 그 본래의 고유 용도대로 사용되고 있는 점, 역사를 이용하는 승객의 편리를 도모하기 위해 설치된 시설의 용도를 고려하면 그 사용자는 불특정 다수의 승객이고, 원고는 그 용도대로 사용될 수 있도록 이를 관리하는 지위에 있는 점, 광주송정역사에서 차지하는 임대면적의 비율도 0.79%(197.6/24,847)에 불과할 뿐 아니라 모두 역사 내에 설치되어 있어 원고의 직접적인 지배와 관리를 받고 있다고 보이는 점, 임차인들이 그 용도를 본래의 용도와 다르게 임의로 변경할 수 있다고 볼 만한 증거도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임대부분은 원고의 지배와 관리를 받으며 철도시설 본래의 용도대로 사용되고 있으므로 '원고가 철도시설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관정시설과 임대부분을 포함한 이 사건 광



주송정역사는 국가에 귀속되는 부동산에 해당하여 구 지특법 제63조 제1항 단서 제2호에 의하여 재산세(재산분)은 면제된다고 할 것이고, 재산세액의 20%를 납부해야 하는 지방교육세도 함께 면제된다.

그럼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피고 ■■■구청장이 이 사건 관정시설과 이 사건 ■■■역사 중 임대부분에 대하여 한 재산세(재산분), 지방교육세 처분은 위법하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다.

2) 별지1 목록 제1 내지 4항, 제7항, 제9항, 제11항, 제15항의 재산세 도시지역분의 면제 여부에 관한 판단

가) 구 지특법 제63조 제1항의 개정내용에 관한 검토

구 지특법(2014. 1. 1. 법률 제12175호로 개정된 것)은 제63조 제1항에서 원고가 취득하는 철도차량 및 철도시설용으로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과세기준일 현재 철도시설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도시지역분 포함)를 2014. 12. 31.까지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었는데, 이와 같이 철도시설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 도시지역분을 포함한 재산세 전부를 면제하는 것으로 규정하였다. 그 후 위 규정의 일몰이 다가오자 2014. 12. 31. 법률 제12955호로 개정되어 제63조 제1항 본문은 도시지역분을 포함한 재산세 50%만 경감하되, 단서에서 2016. 12. 31.까지 취득하는 부동산 중 철도건설법 제17조 제1항에 따라 국가로 귀속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종전의 재산세 면제를 유지하는 것으로 법률이 개정되었다(이하 '이 사건 개정 법률조항'이라고 한다).

나) 이 사건 개정 법률조항의 입법취지

위와 같이 종전 구 지특법이 원고에 대하여 도시지역분을 포함한 재산세를 전



부 면제하였으나, 이는 원고의 담세력에 비하여 과도한 감면을 주는 것으로 다른 공공 기관과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개정할 필요성이 있다는 문제가 제기되었고, 한편으로 감면률의 축소는 철도요금의 상승 요인으로 작용하여 물가에 영향을 줄 수 있으며, 일부 교통이 불편한 지역의 철도서비스 제공에 지장을 줄 수 있다는 등의 문제점을 고려하여, 재산세 감면율을 50%로 조정하되 국가로 귀속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종전과 같이 재산세 면제를 유지하는 것으로 개정되었다. 이와 같은 입법취지나 개정목적은 고려하면, 이 사건 개정 법률조항은 그 입법취지나 개정목적이 감면율의 조정에 있지 도시지역분을 면제대상에서 제외하는 것과 같은 세목의 조정에 있지 아니함을 알 수 있다(피고들도 이 사건 개정 법률조항의 입법취지가 재산세 도시지역분을 면제대상에서 제외하려는 데에 있지 아니함을 인정하고 있다).

다) 일선 행정기관의 혼선과 법률개정에 의한 문제 시정

한편 2014. 12. 31. 이 사건 개정 법률조항으로 개정되었으나 제63조 제1항 본문에서는 50% 경감되는 재산세에 도시지역분을 포함한다고 명시한 반면, 단서에서는 면제되는 재산세에 도시지역분을 포함한다고 명시하지 않아 일선 행정기관에서 그 해석을 둘러싸고 논란이 발생하였고,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피고들과 달리 위 면제되는 재산세에 도시지역분을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하여 원고에게 재산세 도시지역분을 면제해 주었으며(갑 제5호증의 1 내지 7), 원고가 ■■■광역시 ■■■구청장 등을 상대로 제기한 조세심판사건에서, 조세심판원은 구 지특법 제63조 제1항 단서의 면제되는 재산세에 도시지역분이 포함된다고 결정하기도 하였다.

위와 같이 일선 행정기관에서 이 사건 개정 법률조항의 해석과 적용에 논란이 있자, 2015. 12. 29. 법률 제13637호로 구 지특법이 일부 개정되어 제63조 제1항



단서의 면제대상인 재산세에 도시지역분이 포함되는 것으로 명시함으로써 위 조항의 당초 입법취지를 명확히 하였다.

라) 판단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사실이나 비과세요건사실이나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엄격하여야 하고 행정편의적인 확정해석이나 유추해석은 허용되지 않는다. 그러나 엄격해석의 원칙에서도, 가능한 문언의 의미 내에서 당해 규정의 입법 취지와 목적 등을 고려한 법률 체계적 연관성에 따라 그 문언의 의미를 분명히 밝히는 체계적·목적적 해석방법은 그 규정의 본질적 내용에 가장 접근한 해석을 위한 것으로서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에 부합하므로, 위와 같은 해석이 엄격해석의 원칙에 반한다고 할 수 없다. 나아가 조세법규를 엄격 해석하는 이유는, 과세관청이 조세법규를 자의적으로 해석할 경우 납세의무자별로 조세부담이 달라져 국민의 재산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고, 이러한 자의적인 과세권 행사로부터 국민의 재산권을 보호함으로써 과세행정에서 법적 안정성과 예측가능성을 보장하기 위함이다. 그런데 이 사건 개정 법률조항은 오로지 원고를 대상으로 한 감면규정으로서 다른 납세의무자에 대한 자의적 법집행의 여지가 없고, 당초 입법오류로 보이는 이 사건 개정 법률조항을 입법자의 의도와 다르게 문자 의미 그대로만 해석할 경우 오히려 납세의무자의 법적안정성이나 예측가능성을 훼손할 수 있다. 따라서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개정 법률조항의 목적이나 입법취지, 개정연혁 등을 고려하면, 구 지특법 제63조 제1항 단서에서 면제되는 재산세에는 도시지역분을 포함한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고, 이와 같은 해석이 엄격해석의 원칙에 반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들이 별지1 목록 기재 순번 제1 내지 4항, 제7항, 제9항, 제11항,



: 2017-09-25

제15항의 재산세 도시지역분을 면제하지 아니하고 과세한 각 처분은 위법하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있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 중 별지2 청구인용 목록 기재 과세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정용석



별지1

과세처분 내역

순번	처분청	과세대상	사업명	과세처분일	세목	과세액(경감율)
1	피고 광역시 구청 장	[Redacted]	고속 철도사업	2015.7.28.	재산세 (도시지역분 포함)	9,690원 (50%경감)
					지역자원 시설세	0
					지방교육세	1,240원
2		[Redacted]	고속 철도사업	2005.7.28.	재산세 (도시지역분 포함)	3,822,250원
					지역자원시설세	5,945,020원
				2015.7.28.	지방교육세	52,830원
소계 : 9,831,030원						
3		[Redacted]	복 선전철화	2015.7.7	재산세 도시지역분	383,230원 (50% 경감)
					지역자원시설세	300,780원
4		[Redacted]	복 선화	2015.7.7	재산세 도시지역분	3,951,020원 (50% 경감)
					지역자원시설세	6,717,780원
5		[Redacted]	복 선전철화	2015.7.7	지역자원시설세	157,940원
6	피고 시장	[Redacted]	복 선전철화	2015.7.7.	지역자원시설세	108,270원
7		[Redacted]	복 선전철화	2015.7.7.	재산세 도시지역분	9,570원 (50% 경감)
8		[Redacted]	복 선전철화	2015.7.7.	지역자원시설세	2,118,890원



: 2017-09-25

9		[Redacted]	[Redacted]복 선전철화	2015.7.7.	재산세 도시지역분	232,890원 (50% 경감)
					지역자원시설세	171,920원
10		[Redacted]	[Redacted]복 선전철화	2015.7.7.	지역자원시설세	10,510원
					소계 : 14,162,800원	
11		[Redacted]	[Redacted]복 선전철 화	2015.7.10.	재산세 도시지역분	2,479,120원 (50% 경감)
					지역자원시설세	4,222,230원
12		[Redacted]	[Redacted]복 선전철 화	2015.7.10.	지역자원시설세	177,340원
13	피고 [Redacted]시장	[Redacted]	[Redacted]복 선전철 화	2015.7.10.	지역자원시설세	330,820원
14		[Redacted]	[Redacted]복 선전철 화	2015.7.10.	지역자원시설세	243,570원
					소계 : 7,453,080원	
15	피고 [Redacted]시장	[Redacted]	[Redacted]복 선전철화	2015.7.7.	재산세 도시지역분	67,580원 (50% 경감)
					지역자원시설세	176,320원
소계 : 243,900원						
전체 합계 : 31,778,083원						



: 2017-09-25

별지2

청구 인용 목록

순번	처분청	과세대상	사업명	과세처분일	세목	과세액
1	피고 광역시 구청장	[Redacted]	철도사업	2015.7.28.	재산세(도시지역분 포함)	9,690원
					지방교육세	1,240원
2	[Redacted]	역사	철도사업	2005.7.28.	재산세(도시지역분 포함)	3,822,250원
					지방교육세	52,830원
소계 : 3,886,010원						
3	피고 시장	[Redacted]	복 선전철화	2015.7.7	재산세 도시지역분	383,230원
4		[Redacted]	복 선화	2015.7.7	재산세 도시지역분	3,951,020원
5		[Redacted]	복 선전철화	2015.7.7.	재산세 도시지역분	9,570원
6		[Redacted]	복 선전철화	2015.7.7.	재산세 도시지역분	232,890원
소계 : 4,576,710원						
7	피고 시장	[Redacted]	복 선 전 철 화	2015.7.10.	재산세 도시지역분	2,479,120원
8	피고 시장	[Redacted]	복 선 전 철 화	2015.7.7.	재산세 도시지역분	67,580원
전체합계 : 11,009,420원						



별지3

관계법령

■ 구 지방세법(2015. 12. 29. 법률 제13636호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5조(과세대상)

재산세는 토지, 건축물, 주택, 항공기 및 선박(이하 이 장에서 "재산"이라 한다)을 과세대상으로 한다

제107조(납세의무자)

①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단서 생략)

제112조(재산세 도시지역분)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호에 따른 도시지역 중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 고시한 지역(이하 이 조에서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 지역"이라 한다) 안에 있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건축물 또는 주택(이하 이 조에서 "토지등"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호에 따른 세액에 제2호에 따른 세액을 합산하여 산출한 세액을 재산세액으로 부과할 수 있다.

1. 제110조의 과세표준에 제111조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

2. 제110조에 따른 토지등의 과세표준에 1천분의 1.4를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해당 연도분의 제1항제2호의 세율을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1천분의 2.3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다르게 정할 수 있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 지역 안에 있는 토지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형도면이 고시된 공공시설용지 또는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 토지 중 지상건축물, 골프장, 유원지, 그 밖의 이용시설이 없는 토지는 제1항 제2호에 따른 과세대상에서 제외한다. <개정 2010.12.27, 2013.1.1>

제114조(과세기준일)

재산세의 과세기준일은 매년 6월 1일로 한다

제142조(과세대상)

① 지역자원시설세의 과세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발전용수(양수발전용수는 제외한다), 지하수(용천수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지하자원, 컨테이너를 취급하는 부두를 이용하는 컨테이너 및 원자력발전·화력발전(이하 이 장에서 "특정자원"이라 한다)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2. 소방시설, 오물처리시설, 수리시설, 그 밖의 공공시설로 인하여 이익을 받는 자의 건축물, 선박 및 토지(이하 이 장에서 "특정부동산"이라 한다)

제143조(납세의무자)

지역자원시설세의 납세의무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1.3.29>

7. 특정부동산: 특정부동산의 소유자

제150조(납세의무자)

지방교육세의 납세의무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6. 재산세(제112조제1항제2호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재산세액은 제외한다)의 납세의무자

제151조(과세표준과 세율)



① 지방교육세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산출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6. 이 법 및 지방세감면법령에 따라 납부하여야 할 재산세액(제112조제1항제2호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재산세액은 제외한다)의 100분의 20

■ 구 지방세특례제한법(2015. 12. 29. 법률 제13637호 개정되기 전의 것)

제63조(철도시설 등에 대한 감면)

① 「한국철도시설공단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철도시설공단(이하 "한국철도시설공단"이라 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이 취득하는 「철도산업발전 기본법」 제3조 제2호에 따른 철도시설(같은 호 마목 및 바목에 따른 시설은 제외하며, 이하 이 항에서 "철도시설"이라 한다)용으로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과세기준일 현재 철도시설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지방세법」 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의 100분의 50을 2016년 12월 31일까지 각각 경감한다. 다만, 한국철도시설공단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산을 2016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는 경우에는 취득세 및 재산세를 각각 면제한다.

1.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제3조 제4호에 따른 철도차량
2. 「철도건설법」 제17조 제1항에 따라 국가로 귀속되는 부동산

■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2. "철도시설"이라 함은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시설(부지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 가. 철도의 선로(선로에 부대되는 시설을 포함한다), 역시설(물류시설·환승시설 및 편의시설 등을 포함한다) 및 철도운영을 위한 건축물·건축설비
- 나. 선로 및 철도차량을 보수·정비하기 위한 선로보수기지, 차량정비기지 및 차량유치시설
- 다. 철도의 전철전력설비, 정보통신설비, 신호 및 열차제어설비
- 라. 철도노선간 또는 다른 교통수단과의 연계운영에 필요한 시설
- 마. 철도기술의 개발·시험 및 연구를 위한 시설
- 바. 철도경영연수 및 철도전문인력의 교육훈련을 위한 시설
- 사. 그 밖에 철도의 건설·유지보수 및 운영을 위한 시설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

■ 구 철도건설법(2015. 8. 11. 법률 제134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다만,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철도산업발전 기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3.3.23, 2015.8.11>

6. "철도시설"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부지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 가. 철도의 선로(선로에 딸리는 시설을 포함한다), 역 시설(물류시설, 환승 시설 및 역사(역사)와 같은 건물에 있는 판매시설·업무시설·근린생활시설·숙박시설·문화 및 집회시설 등을 포함한다) 및 철도 운영을 위한 건축물·건축설비
- 나. 선로 및 철도차량을 보수·정비하기 위한 선로 보수기지, 차량 정비기지 및 차량 유치시설
- 다. 철도의 전철전력설비, 정보통신설비, 신호 및 열차 제어설비



: 2017-09-25

라. 철도노선 간 또는 다른 교통수단과의 연계 운영에 필요한 시설

마. 철도기술의 개발·시험 및 연구를 위한 시설

바. 철도경영연수 및 철도전문인력의 교육훈련을 위한 시설

사. 그 밖에 철도의 건설·유지보수 및 운영을 위한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7. "철도건설사업"이란 새로운 철도의 건설, 기존 철도노선의 직선화·전철화 및 복선화, 철도차량 기지의 건설과 철도역 시설의 신설·개량 등을 위한 다음 각 목의 사업을 말한다.

가. 제6호 각 목의 시설 건설사업

나. 제6호 각 목에 따른 건설사업으로 인하여 주거지를 상실하는 자를 위한 주거시설 등 생활편의 시설의 기반조성사업

다. 제15조 제1항에 따라 설치하는 공공시설·군사시설 또는 공용 건축물(철도시설은 제외한다)의 건설사업

라. 건설된 철도시설의 토지등(「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토지등을 말한다)을 취득하거나 그 사용권원(사용권원)을 확보하는 사업

제17조(시설의 귀속 등)

- ① 철도건설사업으로 조성 또는 설치된 토지 및 시설은 준공과 동시에 국가에 귀속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및 시설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국가에 귀속된 고속철도시설의 사업시행자에게는 그가 투자한 총사업비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시설을 무상으로 사용·수익하게 할 수 있다.
- ③ 고속철도건설사업으로 조성 또는 설치되는 토지 및 시설의 귀속에 관하여는 사업시행자가 한국철도시설공단인 경우에는 「한국철도시설공단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고, 사업시행자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른 민자유치 사업의 시행자인 경우에는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한국철도시설공단법

제24조(자산·부채의 승계 등)

- ① 국가는 제7조에 따라 공단이 건설한 철도시설과 철도의 역세권 및 철도 부근 지역의 개발사업 등과 관련하여 취득한 재산·시설 및 그 운영에 관한 권리(이하 "자산"이라 한다)와 그 자산과 관련된 채무 등의 의무(이하 "부채"라 한다)를 각 사업이 끝나는 때에 포괄하여 승계한다. 다만, 공단이 국가로부터 기본법 제26조에 따른 철도시설관리권을 설정받은 철도시설과 직접 관련된 부채는 국가가 승계하지 아니한다.
- ② 공단이 제1항에 따른 자산과 부채를 인계하려면 인계에 관한 서류를 작성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③ 제1항에 따라 국가가 자산 및 부채를 승계하는 시기와 승계할 자산·부채의 평가방법 및 평가기준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한국철도시설공단법 시행령

제25조(자산·부채의 승계 등)

- ① 법 제24조제1항 본문에서 "각 사업"이란 「철도건설법」, 「택지개발촉진법」 또는 그 밖에 공단의 사업과 관련된 법령에 따라 실시계획의 승인 등을 받은 단위사업을 말한다.



: 2017-09-25

- ② 공단이 법 제24조제2항에 따라 인계의 승인을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승인 신청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1. 인계자산의 범위 및 목록
 2. 인계자산 및 부채의 가액
 3. 그 밖에 인계에 필요한 서류
- ③ 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자산 및 부채의 승계 시기는 제1항에 따른 단위사업이 끝나 공용(공용)이 개시되는 날로 한다. 끝.